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

김남수진(샘)/연세대 총여학생회

#.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 어떻게 시작되었나

학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반성폭력 학칙(이하 학칙)이 해가 지날수록 구성원의 반성폭력에 대한 인식 없음과 학교 행정 체계의 비협조, 그리고 학칙 내용의 문제¹⁾와 맞물려 제정 당시의 원래 의미를 구현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학칙에 따른다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사건 해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학내 여성운동단위 내에서는 학칙 자체가 지니고 있는 미흡함을 인식하는 동시에 이를 운용하는 (학칙에 따라 구성된) 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교수의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위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 「교수 성폭력 토론회」(2003.5.22.)가 총여학생회 주최로 열리게 되었는데, 이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학칙을 통해 교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해결하기에 현 학칙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다시금 인식하게 됨에 따라 학칙 개정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또한 이는 다른 학교 여운단위 내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제6회 여성연대한판(2003. 8.)에서 각 학교 활동가들이 모여 「반성폭력 학칙과 상담소 워크샵」을 기획하게 된다. 이 기획은 약 50개 대학의 학칙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²⁾함으로써 학칙이 개정되어야 하는 지점들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짚어내었고 이는 곧 연세대에서 시작될 학칙 개정 운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의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총여학생회는 2003년 2학기부터 캠퍼스에서 본격적으로 학칙 개정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대책위에 학칙 개정에 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2003.9.18.)를 개최하였으며, 학생회 선거 때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각 단대 학생회 선거운동본부를 대상으로 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위한 선분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 학칙과 대책위 운영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지속적으로 알려냄으로써 학내에서 학칙 개정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한판 워크샵 결과물과 공청회 결과물을 참고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만든 총여학생회측 개정안을 제출하여, 결국 대책위로부터 학칙개정 소위원회가 꾸려져(2003.12.) 개정 작업을 논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1차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학생복지처장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없음과 독단적인 태도로 인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면서 그만큼 합의하기에 더 민감한 조항들은 삭제된 채 형식적인 회의로 마무리 되고 만다.³⁾ 2004년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총여학생회가 구성되었는데 1차 소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총여학생회는 전년대와 같은 소위원회에서 개정 작업을 이어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다시금 새로운 학칙 개정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운동과 그 어려움

1. 운동 내용

-개정 운동 개괄

2004년이 시작되면서 모든 학생회들이 새로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학칙 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들을 알리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1월부터 각 단대와 학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학칙 개정 교양을 진행하고 대대적인 선전을 시작하였다. 또한 교육투쟁 논의를 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칙 개정을 가장 중요한 5가지 사안 중 하나로 포함시키면서 전면적인 학칙 개정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겨울 확대간부수련회 때 유일한 강연 시간을 학칙 개정 교양 및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강연으로 채웠고 겨울방학동안 학생회에서 제작하는 자료집과 수첩 등의 글을 실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학칙 개정의 내용을 빠지지 않고 실었다. 그러나 학칙 개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학칙을 운용하고 학칙 개정 작업을 실제로 논의하는 대책위가 지니고 있는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학칙 개정 내용과 더불어 대책위 규탄 내용을 동시에 알려내었다. 당시의 대책위⁴⁾는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위원장 및 당면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주의나 피해자 보호와 같은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의지와 소양이 없는 이들이었고 대책위 테이블에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으며, 학칙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회의 진행 원칙들조차 지키지 않음으로써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다면

3) 학칙 개정 운동의 어려운 점에서 추가로 언급하겠지만, 소위원회를 비롯하여 대책위의 위원이 어떤 교수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회의의 민주성은 담보될 수도, 전혀 담보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정 요구를 한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에 교수-학생 위계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교수 위원은 애초에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를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회의에 임하기도 한다.

4) 지난 5월 연세대학교는 새로운 총장이 선출됨에 따라 부총장 및 각 실처장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이들이 당면적으로 구성되는 대책위 역시 새로운 위원들로 교체되었다. 당시의 대책위라 함은 위원들이 교체되기 이전의 대책위를 말하며 2003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단 한 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비민주성과 독단으로 일관했던 매우 문제적인 대책위를 지칭한다.

1) 학칙 내용의 문제라 함은 피해자 보호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제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지 못한 점, 가해자 징계 규정이 징계라고 할 수 없을 '조치'들로만 이루어진 채 징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점, 학칙 적용 범위가 허술하여 사각지대로 교묘히 빠져나가는 가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점, 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의 문제, 성폭력 상담실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한다.

2) 분석 내용은 '학칙 전반 개념상의 문제/피해자 보호 규정/가해자 징계 관련/적용 범위/학생 위원과 여성 위원의 참여/상담소의 구성 및 권한'으로 분류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된’ 교수들이 대책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겠지만, 현 연세대 학칙에 명시된 바 대책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당연직 위원들은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장이 임명한 각 실처장이 이미 대책위원으로 구성됨으로써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만한 교수가 대책위원이 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총여학생회는 대책위원 선임에 어떠한 선임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위 파행에 가장 큰 원인이자 책임을 져야하는 대책위원장 사퇴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당시 대책위가 얼마나 문제적인지를 끊임없이 알려내었다. 또한 그러한 대책위라면 학칙 개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학생측 개정안으로 반성폭력 학칙을 개정할 것”이라는 요구로 입장을 정리하고, 3월 말 교육투쟁 사안들을 가지고 본관 점거에 들어갈 때 “반성폭력 학칙 개정- 학생측 개정안 실현!”이라는 요구로 함께 들어가게 된다. 본관 점거 이후 수차례 계속된 교수학생 협의회에서 학칙 개정 사안을 이야기하였으나 대화의 여지 혹은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보이지 않았고, 교수학생협의회에 참석한 각 주요 실처장들은 얼마 지나지 않은 5월에 모두 교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의 협상에서 별다른 기대를 갖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교육투쟁의 다른 사안들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되었고 반성폭력 조항은 취지와 실효성에 맞게 학칙을 개정한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⁵⁾

2. 개정 운동 당시의 어려움

어려운 점은 참 많이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학생대표들과 함께 교육투쟁 사안으로 이 운동을 전개했을 때의 어려운 점과, 학교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충들, 그러면서도 총여학생회 거의 단독으로 진행한 것과 다름없는 개정운동이었기 때문에 빚어졌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 과로로부터 비롯된 체력 저하가 그것이다.

-교육투쟁: 포함시킨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나 그 안에서 운동하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학칙 개정 운동을 하면서 항상 했던 생각은 지난해부터 어렵게 끌어낸 이 학칙 개정의 목소리를 잘 이어가서 반드시 소중한 성과를 얻어내리라는 다짐이었다. 학칙 제정만큼 학칙 개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개정 운동을 통해 그리고 실제로 학칙 개정을 이뤄냄으로써 제정 운동 당시의 여성주의자들의 노력과 의지와 바램을 되살

리고 싶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학내의 상황이 조금 더 반성폭력의 흐름에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랬기 때문에 총여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칙 개정을 이뤄내려는 올해, 지금, 이 시간의 중요성을 늘 자각하고 전력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반성폭력 학칙 개정이라는 사안을 가지고 교육투쟁에 참여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반성폭력 이슈를 총여학생회만의 요구가 아닌 교육투쟁을 하는 전체 주체들의 요구 중 하나로 위치지음으로써 학교측과의 협상에서 더 큰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이다. 다른 학생 대표들이 얼마나 반성폭력에의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그들과 함께 총장과 부총장 및 각 실처장을 대면하여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대책위의 파행을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은, 반성폭력 관련 사안이 교수 학생 간 협약으로 도출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 기간을 통해 학칙과 대책위 관련한 문제들을 학생 대표는 물론 여러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다. 학칙 개정 교양 및 선전, 언론으로부터의 관심 등 이전까지는 반성폭력 학칙이 존재하는지도 잘 몰랐던 학생들에게 학칙의 의미와 개정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알려냄을 통하여 학내에서의 반성폭력 여론화가 집중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저 정도의 의미를 찾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어려움이 실로 굉장히 컸다는 것 역시 깊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반성폭력에 대한 의지와 인식이 부재한 학생대표(중앙운영위원)들과 함께 교육투쟁에서 학칙 개정 사안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육투쟁의 요구안들 중에 총여학생회측 요구안이 으레 하나씩은 들어가서인지 처음에 학칙 개정을 넣겠다고 했을 때는 ‘호의적’인 분위기였고, 위낙 이 사안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 많이 알리고 다닌 탓에 사안의 심각성도 인식하는 듯했다. 하지만 처음 교투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협약서가 나오기까지 약 4개월을 되돌아봤을 때 우여곡절은 너무도 많았다. 여성 관련 문제 혹은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학칙 개정 꼭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하다가도 정작 이 사안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려 하면 언제나 그들은 반대했다. 물론 몇몇 여자중운위원들은 그럴 때마다 학칙 개정이 핵심사안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지하여 함께 목소리를 내며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장 직선제나 등록금 투쟁이라는 ‘대의’를 이루어야 하는 총학생회와 여타의 중운위원들은 그 두 가지를 핵심 사안으로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학칙 개정을 언제나 부차적인 것에 위치시키려 했다. 가장 잇을 수 없는 사례는 학생 총회를 준비했던 논의이다. 학생 총회 때 ‘학생측 개정안으로 반성폭력 학칙을 개정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결의시키자는 의견이 나와서 정말 오랜 토론과 설득 끝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다음 논의 때 학생총회 성사를 위해서는 2000명이 모이는 약 30분 정도의 순간에 모든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안건은 최소여야 한다, 따라서 더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만을 상정해야 한다는 이유

5) 협약된 반성폭력 조항의 전체는 이렇다. 1. 반성폭력 학칙을 그 취지와 실효성에 맞게 개정한다. 2. 반성폭력 학칙에 예방차원의 교수성폭력 특별 조항을 마련한다. 3.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조속히 정상화한다. 4. 성폭력 대책위원회 교수 위원 선임 시 학생참여를 보장한다. 5. 여학생처 산하에 있는 성폭력 상담실을 독립시킨다.

로 이전 회의 때의 결정사항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은 무슨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반복되었고 설득하고 싸우고 또 설득하면서 위기를 타계해 나갔지만 그럴 때마다 찾아드는 분노와 허탈감, 반복되는 에너지 소진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총여학생회이기 때문에 획득할 수 있는 협상 통로와 여러 가지 물적 자원들을 놓치지 않고 학칙 개정 운동에 유리하게 끌어 쓸 수 있기 위해서는, 반성폭력 이슈를 그저 부차적인 것으로 위치지으려 하면서도, 성폭력 문제도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만 자신들의 운동의 순수성과 정당성이 더욱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그들의 실체를 대면하고 협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회의감과 무력감과 혼란스러움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속적으로 큰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대책위원장 사퇴 운동: 운동에 대한 학교측의 무시와 무책임

대책위원장 사퇴 운동이 한창 무르익었을 즈음 대책위원장은 성폭력 대책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유로 부총장직을 사직하면서 당연직이었던 대책위원장직도 함께 사직하게 된다. 성폭력 대책위원장 사퇴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학교측에서도 알고 있었을 테지만, 대책위원장직을 사직한지 일주일도 지나도록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폭력 대책위원장이 사직을 했다면 대책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위원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대책위의 운영이 그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평소 대책위 테이블에서 학생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대책위원장 사직도 이루어진 것이다. 더불어 대책위원장이 사직한 그 시점이 대책위원장 사퇴 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라는 것이 운동을 진행하던 이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와 운동을 무시로 일관했음에 다름 아니고 대책위원장은 파행적 대책위 운영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칙 개정 및 대책위 규탄 운동은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수 있었으나, 운동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급하게 계획과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황망함과 분노 속에서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학교측의 태도는 교수·학생 협의 테이블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서 학칙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논의하는 중에도 학생들의 주장과 설득을 무시하고 논의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등 소통이나 토론이라 할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 총여학생회 단독 활동으로서의 학칙 개정 운동

학칙 개정 운동은 학교측과의 싸움과 여론화 작업이라는 큰 두 가지 줄기로 진행되

었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들이 학칙과 대책위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측을 상대로 협상해 나아갈 때 더 큰 힘을 갖게 하기 때문에 여론화 작업에 무엇보다 집중하여 힘을 쏟았다.

일주일 동안 훼손되지 않고 걸려있기를 소망하며 학칙 개정 내용과 대책위 규탄 내용이 담긴 플랜카드를 일요일 밤마다 8~10장씩 써서 시리즈로 매주 걸었고, 각 단대와 중도, 학관에서 자보전을 했다. 자보도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줄글로 작성한 평범한 자보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이용하여 적절한 미니미와 소품들, 그리고 말풍선으로 그림 자보를 만들어 부착함과 동시에 이 그림 자보를 각 과반 온라인 커뮤니티에 웹자보 형식으로 선전 하였다. 이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꽤 흥미를 끌기도 했다. 또한 각 단대를 돌면서 단대 학생회와 과반 학생회 임원을 및 학내 언론사를 상대로 교양을 진행하고, 총여학생회에서 발간하는 매체에 정기적으로 이 내용을 실었다. 이와 함께 대책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였는데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앞에 학생들이 가장 많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두세시간씩 서명을 받으면서 이 서명을 진행하는 이유와 학칙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직접 설명하였고 유인물을 나눠주었으며, 2500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다른 선전에 비해 서명운동은 학생들을 만나 설명하고 그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이 사안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선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수의 여학생들이 지지의 뜻을 표하며 서명을 할 때 그 동안의 학칙 개정 운동이 헛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며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운동에 대한 피드백도 되었다. 그러나 서명을 거부하는 많은 남학생들과 일부 여학생들로 인해 때로는 많이 지치기도 했다. 그 밖에 (안전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학생 총회에서 발제, 언론사 인터뷰, 기고 등 선전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하여 선전 작업을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총여학생회 활동가들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친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교육투쟁의 한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학칙 개정은 거의 총여학생회만의 운동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학내 전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 120%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학칙 개정 운동이 진행된다고 해서 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총여학생회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학생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은 물론 총여학생회 자체의 행사와 연대회의 활동 등의 일들을 함께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한정된 사람과 힘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간간히 교투 기간동안 학칙 개정 이야기가 가장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전해 들려올 때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지지하며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현재 진행상황과 성과

6) 2004년 3월 당시 총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게 되면서 신입총장이 선출될 5월까지의 총장 공석을 메우기 위해 당시 부총장은 총장대행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1. 소위원회에서 개정이 결의되어 대책위 최종 결의를 앞두고 있는 것들

5월 초 협약서가 도출되어 교투가 마무리되고 이어 신임 총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대책위가 구성되어 학칙을 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작업들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대책위가 구성될 때 그 동안의 운동의 첫 번째 성과가 가시화되었는데, 그것은 대책위의 일반 교수 위원 선임 시 학생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협약의 결과였다. 대책위의 당연직 교수 위원들이 특정 처장들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일반 교수 위원만이라도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가진 교수를 선임하기 위하여 결었던 요구였는데, 이것이 약속됨에 따라 총여학생회가 추천한 교수 중 1인이 대책위 일반 교수 위원에 선임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⁷⁾ 이리하여 6월에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된 첫 번째 정기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학칙 개정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소위원회를 꾸려 7월에 1차 학칙개정 소위원회를 열게 되었다. 새로운 소위원회는 이전의 소위원회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서 민주적인 토론이 어느 정도 가능했고 실제로 몇 가지 중요한 조항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1차 소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지 않아 아직 논의 중인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하여 총여학생회와 교내 성폭력 상담실이 협의하여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9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소위원회에서 마지막 검토 후 결의하는 과정이 남았으며,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최종 결의 후 학칙 개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아직 2차 소위원회와 대책위의 결의가 남은 시점에서 선불리 성과라고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개정될 예정인 조항들을 간략히 덧붙이겠다. 《피해자 보호 조항 강화/적용대상의 범위 확대/성폭력 상담실장의 자격 조건 보완 및 구체화/가해자 불출석시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심의 조항 추가/징계 및 조치 조항 강화-‘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가해자의 사회 봉사’, ‘사건 발생 후 가해자가 학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위로 변동하는 것을 막는 조치’ 등 추가/사건 조사 및 이의 신청 절차에 관한 조항 구체화/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 추가》가 1차 회의 때 결의됨으로써 개정될 예정에 있다.

2. 학칙을 알려내고 관련한 학내의 문제점들을 알려낸 것, 인지도 높아짐

대책위에서의 논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이 형식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할지라도

7) 교수·직원·학생으로 구성되는 대책위의 특성 상 교수의 발언이 다른 위원들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중 여성주의자 교수가 한 사람이라도 포함된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사건 해결이 가해자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건 공개를 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현재의 학칙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떤 문제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는 수면 위로 드러내어 알려지기 힘들었다. 그 고민은 언제나 문제의식을 느끼는 몇몇 사건 해결 주체의 몫이었고 이를 여론화하기 힘든 것이 학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학칙 개정 운동을 하면서 이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알려내어 많은 이들이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이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물론 학칙의 내용도 대책위의 구성도 어떻게 되어있는지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반대하고 복잡한 학칙 관련 내용들을 납득할만하게 알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선전의 방법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반성폭력 학칙의 존재도 잘 모르고 있던 이들에게 학칙의 존재는 물론 그 문제점까지도 알릴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흐름과 쌓아온 내용을 이용하여 새로 구성된 대책위에서 학칙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조항들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 학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들

1. 대책위원이 누구인가에 따라 너무도 가변적인 학칙 적용과 해석

학칙 개정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던 때에 해결책이 없을 것만 같은 가장 막막하고 회의적이었던 고민은 성폭력 대책위에 관한 것이었다. 학칙 상으로는 신고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유일한 기구가 바로 대책위인데, 이 대책위가 오히려 학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을 뿐더러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 및 조치들을 해석하여 사건 해결에 적용할 만한 인식과 능력 및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대책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해 대책위의 몇몇 위원들의 문제였다. 특히나 이 문제적인 위원들이 대책위원장(부총장)과 당연직 위원(학생복지처장, 대학원 교학처장)으로 위원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아무런 절차적인 합의 방식 없이 대책위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일이 허다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위 운영을 감시 및 제재할만한 어떠한 기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칙을 아무리 좋게 개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개정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고민이었다. 대책위원장 사퇴 운동을 진행하였던 것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심정에서 나온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대책위원장의 잘못을 규탄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만이 대책위가 학칙을 제대로 운용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이러한 운동이 그(들)에게 얼마나 압박이 되었을지는 알 수 없다. 새로이 구성된 대책위가 이전의 대책위보다 더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총여학생회가 벌인 대책위 규탄 운동 때문인지, 새로 임명된 대책위원장과 당연직 위원들이 이전 위원들보다 더 민주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의 고민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대책위원 특히나 그 중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위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같은 학칙이라도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칙 개정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대책위(원)이며, 이들을 감시하고 제재할 상위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2. 학칙의 조항들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포괄적이어야 하는가 : 대책위의 기능 및 성폭력 상담실의 자율권 문제와 관련하여.

학칙 개정안을 만들면서 모든 조항들을 가능한 한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대책위가 사건 처리를 할 때 학칙에 명시된 포괄적 개념들을 가해자 입장이나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에서였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는데, 실제로 대책위에서 논의되는 사건 만큼이나 상담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책위는 전체 위원이 13명이고 그 중에 반 이상이 교수이기 때문에 회의 날짜를 한 번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대책위가 어렵게 열린다고 해도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사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시간 동안 회의를 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 가량 열리는게 보통이다. 따라서 신고된 사건들을 전부 대책위를 열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대책위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잘'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상담실에서는 피해자가 반드시 공식적인 신고를 통해 대책위를 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중재하여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학칙의 어떤 조항들을 구체화할 경우 상담실이 자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학칙에 위반됨으로써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대책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항으로 설득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의 관계적인 방식대로 상담실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조항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인지 사이에서 어떠한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3. 학칙을 지킨다는 것은.

앞서 대책위가 학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문제 말고도 학칙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지니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은 무엇인지 짚어야 할 것이다. 학칙을 지킨다는 것은 대책위의 위상과 상담실(여학생

처)의 위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무부처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속에서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책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해도 실제 그 조치는 교무처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많은 경우 교무처는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는 교무처장이 대책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나 그 사건으로 비롯한 가해자 징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현상적인 이유를 원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대책위의 위상 혹은 대책위원장의 의지의 문제이다. 지난해부터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강의 평가서에 교수 성폭력적 발언 유무 관련한 주관식 문항 삽입'에 관한 건인데, 이는 분명 대책위의 결의 사항이지만 교무처장의 반대로 1년째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교무처장이 대책위원이 아니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해도, 대책위의 위원장은 부총장이기 때문에 행정상 교무처에 대하여 상위 기구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위원장이나 다른 당연직 위원들이 사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무처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결정된 사안이라도 이것이 실행됨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또한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들이 이렇기 때문에 교무처는 대책위로부터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쉬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은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것이다. 학칙에 예방교육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번 개정 작업을 하면서 조항을 강화하기도 하였는데, 이제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교원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무처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상담실에서 여학생처 명의로 협조 요청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유는 그럴만한 시간이 없고 자신들의 업무가 많아 예방교육에 까지 신경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학생처는 다른 처들에 비해 힘이 없고, 상담실은 그 산하에 있는 것으로 말할 나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학칙대로 행하려 하여도 행정적 절차와 힘의 우위관계 안에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칙을 개정하는 것과 학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이러한 상황과 관계를 속에서 함께 고민되어야 할 문제이다.

#. 고민들..

1. 교수성폭력 특별조항 표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학칙 개정 운동을 하면서 교수 성폭력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알려왔고⁹⁾ 그러한 성과로 교투 때 '예방 차원의 교수 성폭력 특별 조항을 마련한다'는 협약이 도

8) 연세대 성폭력 상담실은 여학생처 산하에 있는 기구로서 존재한다.

9) 2003년 한 해 동안 연세대에서는 3건의 교수 성폭력 사건이 문제가 되었으나 3건 모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나 가해자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해결'로 마무리되었다. 3건 모두 가해 교수들(시간강사 포함)이 스스로 학교를 그만 둠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책위는 '잘' 해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출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어느 대학 학칙에도 이 특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남아 있는 숙제이다. 이를 고민하면서 총여학생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자료 요청을 하여 외국 대학 학칙 자료들을 받아서 검토하였다. 이들 학칙에서 교수 성폭력의 정의 및 교수 성폭력의 특징을 고려한 세세한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는 참고할 내용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한국 대학의 학칙 안으로 끌어오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의 상황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활동으로부터 정리된 교수 성폭력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한국 대학에 보다 적절한 특별 조항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나, 이 작업을 총여학생회 혼자서 해내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일이었다. 특별 조항을 신설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대책위는 총여학생회에 이 조항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총여학생회는 아직 마련된 조항이 없고, 이는 학생들이 만들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연구팀을 꾸려 만들어야 한다고 대응하였지만 이러한 우리의 제안이 학교측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는다.

학칙 개정 운동과 함께 교수 성폭력 특별 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대학 여운단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 학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다들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교수 성폭력 특별 조항 표준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성폭력 관련 전문가와 여운단위 활동가 등 교수 성폭력의 특징과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이들이 포함된 연구팀이 교육부 하에 꾸려져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 교수 성폭력 특별 조항 표준안이 나오게 되면 각 학교측에서도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 이를 더 비중 있게 검토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본다. 따라서 학칙에 교수 성폭력 관련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 좀 더 빠른 길로서 표준안 마련을 제안한다.

2. 학칙의 운용에 대한 상위기구의 감독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많이 언급하였듯이, 학칙은 그 조항을 만드는 일부터 해석·적용하는 일까지 그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너무나 가변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학칙의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제재할 상위기구가 필요하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라는 상위기구의 감독과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로 학칙 운용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이 학내의 성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가지지 못하는 이상 반성폭력 학칙이 그 의미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위

기구의 감독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